

(參 照)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

○ 기 간 : '99. 1. 29(금) ~ 2. 5(금) (8일간)

○ 일 정

구 분 일 시	개 요		비 고
	본 회 의	위 원 회	
'99. 1. 29 (금) 11 : 00	○ 개 회 식 - 개회식 - 시정연설 ○ 제1차 본회의 - 제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- 조례안등 일반안전 상정의 건 - '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(안)		장소) 본회의장 사회) 의사담당
'99. 1. 30(토) 09 : 30 11 : 00	휴 회	○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- '99년도의회사무국 업무계획 청취(09:30) 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- 조례안등 일반안전 심사(11:00)	장소) 상임위원회실 "
'99. 1. 31 (일)	휴 회 (공휴일)		
'99. 2. 1(월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- '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(본청, 사업소)	장소) 상임위원회실
'99. 2. 2(화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- '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(본청, 사업소)	장소) 상임위원회실
'99. 2. 3(수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- '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(구청)	장소) 상임위원회실
'99. 2. 4(목) 10 : 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- '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(구청)	장소) 상임위원회실
'99. 2. 5(금) 11 : 00	○ 제2차 본회의 - 조례안 및 일반안전 의결의 건 -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 위원회 계획보고 -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○ 폐 회		장소) 본회의장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번	안 건 명	소 관 부 서	소관위원회
1	○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기획담당관실	기획총무위원회
2	○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	문 화 체 육 담 당 관 실	"
3	○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조례안	총 무 과	"
4	○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"	"
5	○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"	"
6	○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	세 정 과	"
7	○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사회복지과	사회경제위원회
8	○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위원회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1	성남시시설관리 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변경 인가권자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공단의 정관 변경 인가권자를 “내무부장관”에서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변경 (안 제5조 제2항)	기획담당관실	기획총무위원회
2	성남시문화예술 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(안)	☐ 제안이유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 ☐ 주요골자 ○ 본 조례제정 목적 규정 (안 제1조) ○ 기금은 성남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 (안 제2조) ○ 기금의 용도 규정 (안 제3조) ○ 기금은 세입·세출외로 관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(안 제4조) ○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 (안 제5조) ○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, 지출의 절차 및 출납, 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,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함 (안 제14조)	문화체육담당관실	"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3	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· 운영조례(안)	□ 제안이유 ○ 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” 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”를 제정하여 ○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 향상,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처리등,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○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함 (안 제2조 제1항) ○ 지휘·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, 인사 예산·경리·물품출납·비서·기밀·보안·경비·자동차운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금지함 (안 제3조 제1항) ○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 제1항) ○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함 (안 제8조 제1항) ○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(안 제10조 제2항)	총 무 과	기획총무위원회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4	성남시지방별정 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,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 삭제 (제8조 제3항, 제4항) ○ 휴직기간 규정 신설 (안 제11조의2) ○ 휴직의 효력규정 신설 (안 제11조의3)	총 무 과	기획총무위원회
5	성남시지방고용 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, 정년단축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휴직기간 규정 신설 (안 제8조의2) ○ 휴직의 효력 신설 (안 제8조의3) ○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단축 (안 별표)	총 무 과	기획총무위원회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6	성남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	☐ 제안이유 '99. 1. 1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 중 본문에 자구 삽입 및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 (안 제28조의2 제1항 제1호)	세 정 과	기획총무위원회
7	성남시노인복지 기금조성및운용 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상치하는 조항의 일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기금관리를 “세입세출외 현금”에서 “세입세출 예산외” 로 변경 (안 제3조 제1항) ○ 기금 예치은행을 “시중은행”에서 “시금고”로 변경 (안 제3조 제2항) ○ 위원회 추천위원 중 “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” 을 “시장이 추천하는”으로 변경 (안 제4조 제3항) ○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신설 (안 제4조 제7항)	사회복지과	사회경제위원회

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8	성남시재해대책 본부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○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성남시재해 대책본부의 구성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성남시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분장사무를 현행 조직에 맞게 개정 (안 제3조 제4~7항) ○ 근무체제를 성남시 지역사고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로 24시간 연중 근무 하도록 함 (안 제5조 제1항)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위원회